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97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폐지(구자근의원안)	2

I. 개요

1.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97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21.

(3) 회 부 일 : 2025. 4.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의 취지가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제도 취지 측면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이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폐지(구자근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 과세표준(제13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제45조), 연결과세표준(제76조의13) 및 외국법인 과세표준(제91조)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폐지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중소기업·회생기업 : 100% - 일반기업 : <u>80%</u>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중소기업·회생기업 : 100% - 일반기업 : <u>100%</u>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제24조)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조정
○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일반기업은 <u>80%</u> 한도)] × 5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일반기업은 <u>80%</u> 한도)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사회적기업은 20%)	○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일반기업도 <u>100%</u> 한도)] × 5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일반기업도 <u>100%</u> 한도))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사회적기업은 20%)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타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폐지)

* 구자근의원안 2025. 4. 21. 발의(의안번호 9970)

☐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및 회생기업(이하 “중소기업 등”)과 같이 일반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전체에 걸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술적으로 각 사업연도로

구획하여 부과하는 ‘기간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¹⁾.

이에 「법인세법」은 사업연도의 구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음(-)의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 이전 또는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전하여 소득의 시간상 구획으로 인한 조세불공평을 완화하기 위해 결손금²⁾에 대한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결손금의 공제방법으로는 ①결손금을 차후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방식과, ②결손금을 과거로 소급하여 과거의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소급공제방식이 있음. 결손금 이월공제의 경우 모든 법인에 대하여 미래 15년간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3조 및 제14조),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 1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음(법 제72조)³⁾.

1) 국회 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p. 193.

2)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3)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일반법인 기준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는 2015년 이전 사업연도 소득의 100%에서 2016년 80%으로, 2019년에는 60%까지 축소되었으나, 2022년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다시 80%로 상향되었음. 반면, 중소기업 등은 지속적으로 공제한도 없이 이월결손금 전액을 공제해옴. 또한,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은 2019년까지 10년이었으나, 2020년부터 15년까지 연장됨.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15 이전	'16	'17	'18	'19	'20	'23	개정 안
공제 한도	개별 납세	내국 법인	중소	100							
			일반	100	80	80	70	60	60	80	100
		외국법인		100	100	80	80	60	60	80	100
	연결 납세	중소법인		100							
		일반법인		100	80	80	80	60	60	80	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공제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 공제금액이 감소 추이를 보임.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 2. (생략)

[연도별 이월결손금 공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귀속연도	법인 수(A)	이월공제액(B)	법인당 평균 결손공제금액(B/A)
2018년	112,978	25,814,164	228.5
2019년	118,339	21,960,068	185.6
2020년	129,963	22,356,180	172.0
2021년	142,379	28,872,215	202.8
2022년	168,774	44,557,386	264.0
2023년	185,216	39,567,474	213.6
2024년	166,319	38,217,936	229.8

자료: 기획재정부(국세통계연보 '8-1 법인세 신고현황' 기준으로 작성)

□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의 취지가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임을 고려한다면,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반기업에 대하여도 한도 없이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개정안은 다음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폐지될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자본충실의 원칙이란, 출자자나 채권자의 보호와 기업의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물적(物的)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는 항상 그 법적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보유하여, 자본의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상법상의 원칙을 의미함.

현행과 같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법인이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연도 소득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해연도 소득 중 일부를 법인세로 사외유출하여야 하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폐지될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음.

둘째, 최근 일부 국가에서 경제활성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제한도를 완화하는 사례⁴⁾가 있는바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법인의 투자촉진을 유도할 수 있음.

최근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환경 악화, 우리나라의 저조한 내수상황 등으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없는 기업에도 과세하는 결과를 방지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중소기업, 회생계획인가를 이행 중인 기업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는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로 하고 있으므로 공제한도 상향에 따른 이익이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보다는 최근 경영여건 개선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크게 발생한 일반 기업에 주로 귀착될 수 있음.

4) 벨기에 (출처 : Tax Foundation Europ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and Carryback Provisions in Europe, 2024」). 다만, 공제한도를 강화한 국가도 존재함.

둘째, 2020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었는바, 공제한도 적용에 따라 특정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15년 동안 장기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해외의 주요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18개국은 공제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18개국은 공제한도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음.

[OECD 국가 결손금 이월공제 현황]

구 분	국 가	
공제한도 無 (18개국)	호주, 캐나다,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터키	
공제한도 有 (18개국)	오스트리아	과세소득의 75%
	벨기에	1백만유로 초과 과세소득의 70%
	덴마크	857만 2,500덴마크크로네 초과 과세소득의 60%
	프랑스	1백만유로+1백만유로 초과 과세소득의 50%
	독일	1백만유로+1백만유로 초과 과세소득의 60%
	헝가리	과세표준의 50%
	아일랜드	예외적 거래에 대하여는 이월공제 금지
	이탈리아	과세소득의 80%
	일본	소득금액의 50%, 중소기업은 소득금액의 100%
	리투아니아	과세소득의 70%, 소기업은 과세소득의 100%
	폴란드	최초 신고 결손금의 50%
	포르투갈	과세소득의 70%
	슬로바키아	과세소득의 50%
	슬로베니아	과세소득의 50%
	스페인	과세소득의 70%
	영국	과세소득의 50%
	미국	과세소득의 80%
	한국	소득금액의 80%, 중소기업은 소득금액의 10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결손금 공제 개선방안 연구」, 2022. 12.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공제한도가 폐지될

경우 2023년 신고기준 일반법인의 실효세율(19.6%)을 반영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1,3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함.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법인세]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폐지(안 제13조 등)	-1,197	-1,275	-1,349	-1,425	-1,504	-6,750	-1,350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문 의 처

02)6788-5154